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461
----------	-----

제안년월일 : 2019년 2월 27일
제안자 : 교 통 위 원 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송아량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과 정진철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4호)과 경만선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을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2019. 2. 2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3건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대상에 교통약자를 명시하였으며, 시장의 책무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을 강화하고, 택지개발지구 및 도시개발지구 등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시민의 의무에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명시하도록 함

따라서, 3건의 개정조례안과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 일부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시장의 책무에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포함시킴(안 제3조제1항제7호)
- 나.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신설(안 제3조제1항제8호)
- 다. 택지개발지구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신설(안 제3조제1항제9호)
- 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신설(안 제3조제1항제10호)
- 마.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 신설(안 제4조제3항)
- 바. 교통약자 등을 포함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시설 체계적 확충을 명시함(안 제12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8.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10.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①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대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2조(정의) -----</p> <p>-----</p> <p>1.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p> <p>-----.</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②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p> <p>8.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p> <p>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p> <p>10.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p> <p>①~② (생략)</p> <p><신설></p>	<p>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p>
<p>제12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①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① -----</p> <p>-----</p> <p>----- 교통약자를 포함한 시민의-----</p> <p>-----.</p> <p>② (현행과 같음)</p>